##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 174 제출연월일 : 2012. 7. 18

제출자 : 이정율 의원 외 5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가.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올림픽 성공개최 방안 모색, 현안지원, 역할분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: 없음

# 활 동 계 획

#### 1. 활동목적

-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결집 및 성공개최 방안 모색, 현안지원, 역할분담 등을 위해
- 의회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구성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
-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

## 3. 활동기간

○ 특위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## 4. 구 성

○ 정문섭 의원, 이만재 의원, 유인환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정율 의원

## 5. 운영계획

-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공개최 활동 적극 참여 및 지원
- 의회차원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방안 모색, 현안지원
-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운동 전개 등